

주주님 여러분께

제 24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 363 조와 회사 정관 제 22 조에 의하여 제 24 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행주식 총수의 1%이하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 542 조의 4 와 정관 제 22 조에 의거하여 전자 공고로 같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21 년 03 월 26 일(금) 오전 9 시

2. 장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66 (성수동 1 가) B1F

3. 회의목적사항

1) 보고사항

가. 감사보고

나. 영업보고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부의안건

제 1 호 의안 : 제 24 기(2020.01.01~2020.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1 주당 현금배당액 : 100 원

제 2 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제 3 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제 4 호 의안 : 사외이사 김현숙 선임의 건

제 5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세부내용 별첨 참조)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 542 조의 4 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 년 9 월 16 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 368 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 13 조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0 조 제 5 호에 따른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도록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미래에셋대우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관리시스템 인터넷주소 : <https://v.miraeassetdaewoo.com/>

- QR 코드 : 

2)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 기간 : 2021 년 3 월 16 일 ~ 2021 년 3 월 25 일

- 기간 중 24 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 시까지만 가능)

3) 행사방법 : 시스템에 공동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본인확인 수단의 종류 : 휴대폰 인증(pass),

공동인증서(舊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舊전자거래 범용 공인인증서)

4)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1) 직접행사 : 신분증
- 2)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8. 기타 안내사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개최시 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님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으며,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질병 예방을 위해 주주총회에 참석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마스크를 미착용하신 주주님에 대해서는 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결권행사가 필요하신 주주님께서서는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주총회 개최 전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장소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2021년 3월 11일

주식회사 클리오

대표이사 한 현 옥



문의전화 : ㈜클리오 전략기획팀 02-2078-1813

별첨 1)

○ 이사선임 세부내역 (사외이사 1명)

(1)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채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	법정상 결격사유 유무
김현숙	58.03.15	사외이사	없음	이사회	없음	없음	없음

(2) 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성명	주된직업	약력	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김현숙	클리오 사외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세대학교 영문학과 - KBS 교양제작국 프로듀서 - 시사저널, TV 저널 기자 - (現) (주)클리오 사외이사 	없음

정관 일부 변경案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제2조(목적)</p> <p>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1. ~ 24. (생략)</p> <p>25.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p>	<p>제2조(목적)</p> <p>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1. ~ 24. (현행과 같음)</p> <p><u>25. 식음료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유통, 판매</u></p> <p><u>26.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제조, 유통, 판매</u></p> <p><u>27. 생활용품(비누, 칫솔, 세제 포함)의 제조, 유통, 판매</u></p> <p>28.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p> <p><u>29. 전 각호에 관련된 위탁판매 및 수탁판매업</u></p> <p><u>30. 전 각호에 관련된 상품중개업, 판매대리업</u></p> <p><u>31. 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및 무역중개업</u></p>	<p>사업다각화</p>
<p>제4조(광고방법)</p> <p>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cliocosmetic.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한다.</p>	<p>제4조(광고방법)</p> <p>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u>company.cliocosmetic.com</u>)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한다.</p>	<p>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변경</p>

<p>제8조의2(주식등의 전자등록)</p> <p>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p>	<p>제8조의2(주식등의 전자등록)</p> <p>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u>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비상장 사채 등 의무등록 대상이 아닌 주식등에 대해서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문 정비</p>
<p>제12조(신주의 배당기산일)</p> <p>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p>	<p>제12조(신주의 동등배당)</p> <p><u>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u></p>	<p>동등배당 원칙을 명시</p>
<p>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p> <p>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p>	<p>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p> <p>① <u>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u></p>	<p>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p>

<p>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p>	<p><u>②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 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u></p>	<p>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p>
<p>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3개월 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u>③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u></p>	
<p><주식 신설></p>	<p><u>※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등을 전자등록한 경우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설정이 불필요하므로 기준일 제도만으로 운영할 수도 있음.</u></p>	

<p>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p> <p>① ~ ③ (생략)</p> <p>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u>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자의 지급에 관한 내용을 삭제</p>
<p>제20조(소집시기)</p> <p>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p>	<p>제20조(소집시기)</p> <p>① <u>회사는 매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u></p>	<p>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p>
<p>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p>	<p><삭제></p>	
<p>제45조(감사의 선임)</p> <p>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p>	<p>제45조(감사의 선임·해임)</p> <p>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u>선임·해임한다.</u></p>	
<p>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p>	<p><u>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u></p>	<p>감사선임에 관한 조문 정비</p>

<p>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p>	<p><u>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u></p>	<p>전자투표 도입 시 감사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을 반영</p>
<p><신설></p>	<p><u>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u></p>	<p>감사 해임에 대한 의결권 요건을 반영</p>
<p><신설></p>	<p><u>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u></p>	<p>감사 선임 또는 해임 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내용을 반영</p>

<p>제51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p> <p>① (생략)</p> <p>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의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u>제51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u></p> <p>① (생략)</p> <p>② 대표이사는 <u>정기주주총회 회의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u>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p>
<p>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감사는 <u>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u>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주석 신설></p> <p>④ ~ ⑥ (생략)</p>	<p>※ (주1) <u>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6주 전(연결재무제표는 4주 전)까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함.</u></p> <p>※ (주2) <u>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보고서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1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보고서 제출 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필수로 첨부하여야 함.</u></p> <p>④ ~ ⑥ (<u>현행과 같음</u>)</p>	

<p>제54조(이익배당)</p> <p>① ~ ② (생략)</p> <p>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p> <p>④ (생략)</p>	<p>제54조(이익배당)</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제1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u></p> <p><u>※ 제16조제1항에 따라 정한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과 다른 날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음.</u></p> <p>④ (현행과 같음)</p>	<p>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날로 설정할 수 있도록 조문 정비 및 주석 신설</p>
<p><신설></p>	<p>부 칙</p> <p><u>제1조(시행일)</u> 이 정관은 2021년 3월 26일(정기주주총회일)부터 시행한다.</p>	
<p><신설></p>	<p><u>제2조(감사 선임에 관한 적용례)</u> <u>제45조제3항·제5항의 개정규정(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u></p> <p><u>제3조(감사 해임에 관한 적용례)</u> <u>제45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u></p>	<p>부칙 신설</p>

위 임 장

대리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2021년 3월 26일에 개최하는 (주)클리오의 제 24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위 대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의결권 행사를 위임합니다.

- 다음 -

1. 주주번호 :
2. 소유주식수 : 주
3. 의결권있는주식수 : 주
4. 위임할 주식수 : 주
5.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목적사항별 찬반 여부

번호	주주총회 목적사항	찬성	반대
제 1 호	제 24 기(2020.01.01~2020.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 호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제 3 호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제 4 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 5 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각 의안에 대해 위의 찬성란 또는 반대란 중 한 곳에만 O 또는 √로 표시함

6.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수정 안건 등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위임

주주총회시 새로이 상정된 안건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대리인이 주주의 의사표시가 위 5번 항목에서 표시된 찬반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다만 아래에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아래의 지시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항 목	지 시 내 용

주주명: (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위임일자 및 위임시간 : 년 월 일 시

주식회사 클리오 귀중